

민관합동 건의과제 본회의 심의결과(69건)

1. 경제1분과위 소관(총38건)

□ 재정부, 관세청, 공정거래위원회 분야(7건)

건의요지	부처 검토의견	심의결과
1.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○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- 미제출시 액면 또는 출자가액 2%를 가산세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주주변동내역 파악이 곤란한 점 고려시 과중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 ⇒상장 및 등록법인의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	< 불수용 > ○ 동 제출의무는 대주주의 세 금회피 목적의 변칙적 인 주식거래 방지와 적 정한 세무관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협력의 무임	<추후검토> ○ 관계부처 협의후 추후 결정
2.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처리기간 연장으로 투자손실 감소 ○ 수자원공사의 정수 슬러지 등 지자체 및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규정 ⇒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및 청렴 이행의 수행 등 특별한 문제 발생이 없을 경우 일정기간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공사 및 지자체에 권한 부여	< 불수용 > ○ 국가계약법 21조 규정에 따 라 현행 제도상으로도 필요에 따라 장기계속 계약 체결 가능	<불수용>
3. 보세운송시 운송수단 구분폐지 ○ 보세운송시 육송,해송,철송으로 구분 신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운송스케줄변경시 신고취 하후 다시 보세운송 신고 ⇒운송수단 신고 폐지 내지 신고시 운송수단 중복 신고 허용	< 수용 > ○ 한 건의 보세운송 신고시 복수의 운송수단 신고가 가 능토록 개선 ○ 운송스케줄 변경으로인한 운송수단 변경시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	<수용>

<p>4. 관리대상화물(즉시검사화물) 검사 장소 하선장소까지 확대</p> <p>○ 관리대상화물이 하역시점에서 검사장소로 직송되지 못하고 일단 선사계약CY로 반입후 재운송으로 인한 검사지연 및 물류흐름에 역행 ⇒세관인원 및 화물감시, 감독 등 모든것을 고려하여 하선장소 CFS까지 검사장 확대</p>	<p>< 일부수용 ></p> <p>○ 하역작업시 세관장이 지정한 창고로 직접 운송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 여부를 사전에 운송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기 시행</p> <p>○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어, 동 문제점은 '05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</p>	<p><일부 수용></p>
<p>5. 수출신고관련 애로</p> <p>○ 수출신고 누락으로 선적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⇒사후신고제를 도입하여 선적 후 48시간이내 수출신고 가능토록 개선</p>	<p><불수용></p> <p>○ 수출신고서는 관세환급의 기초자료이며 부정·불법 수출방지를 위한 우범요소 선별의 중요 자료임</p> <p>○ 현행 수출신고는 95%이상 전자신고 및 신속통관 체제를 유지</p>	<p><불수용></p>
<p>6. 경품행사시 경품으로 보지않는 금액한도와 경품의 단일가액 한도 문제</p> <p>⇒경품제공 가능 금액 상향 조정 - 소비자 경품(3천원→5천원) - 소비자현상경품가액한도(백만원→2백만원)</p>	<p><불수용></p> <p>○ 부당경쟁 우려, 사행심 방지 차원에서 현행 유지</p>	<p><수용></p> <p>○ 세부사항은 12월중 결정</p>
<p>7.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대상과 예외의 확대 요망</p> <p>⇒한도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해소기간 연장 및 징계완화, 적용제외 대상항목 중 동종업종 출자 관련 거래금액 비중비율을 현행 50%에서 25%로 하향,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한 물적분할 회사에 대해 출자 총액 제한 적용 제외</p>	<p><불수용></p> <p>○ 예외연장기간 연장은 동제도의 실효성을 저하, 밀접업종 판단시 거래비중 완화는 현 상황에서 필요성이 없으며, 기업구조조정 관련 물적분할 회사의 경우 적용제외 전환시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려는 유인 약화</p>	<p><불수용></p>

□ 산업자원부 분야(8건)

건의요지	부처 검토의견	심의결과
<p>1. 보일러 성능검사 폐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대형보일러에 한하여 설치 후 3년 경과된 보일러에 대해 매년 1회 성능검사 실시 ⇒ 법정검사에서 자율검사로 개선 및 지도·조정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불수용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대형 보일러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해 성능검사 폐지곤란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후검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능 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검사의 주기 및 방법 등의 개선 필요
<p>2. LPG용기 상호표시방법 보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LPG용기에 공급자의 상호 등을 페인트로 도색 표시하도록 함 ⇒ 스티커 부착으로 간소화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불수용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책임소재 명확화, 소비자 인식 제고, 용기의 식별 용이성 등을 고려 현행 유지 - 스티커 갈음시 훼손우려 및 즉시 식별 곤란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후 검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호표시방법을 다양화·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
<p>3.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및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지역난방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 제한 ⇒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도 일정기준이상의 열생산시설은 산자부 허가없이 소비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불수용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내 타 열생산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제도는 집단에너지공급확대를 위해 불가피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불수용></p>
<p>4. 안전점검원 선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저하 ⇒병렬로 설치된 배관과 관련된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을 완화하고 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 확대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일부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동법 시행령 개정시 긍정적으로 검토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후검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범위 확대 및 선임기준 관련 구체적 개선방안 검토 필요

<p>5. 배관매설심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필요이상의 심도규정으로 공사비 증가와 도로사용의 제한으로 시민불편 초래 <p>⇒배관매설 심도의 완화</p>	<p><추후검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관매설심도는 가스배관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종합적인 연구검토 선행필요 ('05연구용역 실시 예정) 	<p><추후검토></p>
<p>6. 인입밸브의 설치위치 및 관리주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입밸브 설치 위치를 공동에 설치함에 따른 밸브박스 난립 및 도시가스사 관리에 따른 인력 소요 <p>⇒인입밸브를 사용자 부지내 설치, 사용자 관리토록 시행규칙 개정</p>	<p><불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스누출시 차단용이성 및 비전문성에 따른 안전 측면에서의 문제발생 고려시 수용 불가 	<p><불수용></p>
<p>7.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자 선임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주택에 LPG 공급자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 과중 <p>⇒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을 500 가구에서 1천가구 이하로 완화하고 외부위탁 허용</p>	<p><불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실감안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는 시기상조이며, 외부위탁 허용시 안전관리활동의 부실 초래 	<p><추후검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
<p>8.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의 고압 가스안전관리법 적용제외</p> <p>⇒가스계 소화설비는 소방법상 안전을 위한 시설이므로 고압 가스 허가시설에서 제외하고, 기업체가 자율관리</p>	<p><불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소방법에 의한 검사는 규제의 목적이 다르므로 현행 유지 필요 	<p><불수용></p>

□ 건설교통부 분야(23건)

건의요지	부처 검토의견	심의결과
<p>1.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노동부로 일원화</p> <p>○ 건설현장의 각종 점검으로 인한 요식행위증가와 업무과중 ⇒안전보건점검을 단일기관(노동부)로 일원화</p>	<p><불수용></p> <p>○ 건설현장관리는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건교부로 일원화 하여야 함</p>	<p><추후검토></p>
<p>2. 도시공원내 가공송전선로 설치 불가</p> <p>○ 공원을 경과하는 송전선로의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현행 법상 지하에만 설치토록 제한 ⇒공원을 경과하는 원형철주가 가능토록 법령 개정</p>	<p>< 추후검토 ></p> <p>○ 금년에 도시공원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중이므로, 시행령 개정시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반영 여부 검토</p>	<p><추후검토></p>
<p>3. 공원부지내 정압기 설치</p> <p>⇒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정압기가 포함되도록 개정 요망</p>	<p>< 추후검토 ></p> <p>○ 금년에 도시공원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중이므로, 시행령 개정시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반영 여부 검토</p>	<p><추후검토></p>
<p>4.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</p> <p>⇒인도를 훼손하고 대체 인도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의 진/출입 부문에 한정하여 도로점용료 부과(대체 인도 설치시 면제)</p>	<p><불수용></p> <p>○ 도로법상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- 단, 인도를 설치한 부지가 개인사업 부지라면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님</p>	<p><불수용></p>

<p>5.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한 대형 할인점 입점 제한 개선</p> <p>○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을 받아 대형할인점을 규제할 수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할인점 입점 규제 ⇒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할인점 입점을 규제할 수 없도록 함</p>	<p>< 불수용 ></p> <p>○ 국토계획법령상 준주거 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에서의 대형할인점 설치는 당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허용 여부 결정</p>	<p><불수용></p>
<p>6.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중복 으로 인한 출점지연 및 출점 거부 개선</p> <p>⇒주변 교통에 관한 것은 교통 영향평가 심의시 논의하여 결정 하고 건축심의 및 허가시에는 재론하지 않도록 함</p>	<p><수용></p> <p>○ 행정지도 강화및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</p>	<p><수용></p>
<p>7. 백화점 신축 인허가시 이중부담 개선</p> <p>⇒각종 부담금의 부과와 인허가시 조건 부여(기부채납등)가 혼재 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이중부담 방지</p>	<p>< 일부수용 ></p> <p>○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·군수가 국토계획법 60조의 조건부 허가제도를 위법·부당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</p>	<p><일부수용></p>

<p>8. 택배사업의 불공정거래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택배사업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소포우편물을 운송하는 우체국에 불리 ⇒일반 택배업체와 동일하게 우체국에서 공정한 경쟁 유도 	<p><불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편법령의 적용을 받는 소형우편물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거 운송사업을 강제하기는 곤란 	<p><불수용></p>
<p>9. 물류업체 화물자동차 증차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공급 제한 ⇒물량증가율을 감안하여 동일수준의 증차 허용 	<p><불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시점에서 택배업체에 대한 공급(증차) 허용은 곤란('05.12.31까지 신규 허가 제한) 	<p><별도검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획단 별도 검토
<p>10. 시외고속버스 및 일반시외버스에 대한 정의 통합</p> <p>⇒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·일반버스를 통합하여 승차정원 36이상인 중형이상 승합자동차로 규정</p>	<p><불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승차 정원을 새로 정하는 것은 규제신설에 해당되어 수용곤란 	<p><불수용></p>
<p>11.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화물터미널 건축허용</p> <p>⇒물류업은 제조업과 달리 환경저해 요인이 극소인 바, 개발제한구역안에 시설물 건축 허용</p>	<p><불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린벨트안에 화물터미널을 허용할 경우 도시민의 생활환경 악화와 환경훼손은 물론 구역관리에 어려움 초래 	<p><불수용></p>
<p>12. 국내 고속버스의 택배화물 유상탁송 허용</p> <p>⇒기존 소화물업체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물운송 양성화 필요</p>	<p><불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속버스에 화물운송 허용시 운행상 안전문제 우려와 여객과 화물로 구분한 법취지 위배 	<p><추후검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승객안전 기존 소화물 시장 등을 고려하면서 장기검토

<p>13.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임·요금제 도입</p> <p>○ 현행 시장자율체제하에서는 운송원가 상승요인 발생시 화주에게 전가</p> <p>⇒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운임제도 도입 또는 운임·요금 신고제 부활</p>	<p><불수용></p> <p>○ 화물운송시장의 운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곤란</p>	<p><불수용></p>
<p>14. 사업용화물자동차 과적단속 기준 일원화</p> <p>⇒운행제한기준 법령 일원화 및 운행제한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운행허가 일원화</p>	<p><불수용></p> <p>○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상 제한기준은 각각 다른 목적 및 성격하에 운용</p>	<p><불수용></p>
<p>15. 휴지차량 검사 자동 연장</p> <p>⇒사업용 화물자동차 휴지신고 수리시 휴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제도개선</p>	<p><수용></p> <p>○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·추진(입법예고 완료)</p>	<p><수용></p>
<p>16. 화물운송 위·수탁증 교부완화</p> <p>⇒화물을 운송중이거나 무선전화로 배차지시를 받을 경우 위·수탁증 발급이 어려우므로 교부 대신 화물운송대장에만 적용토록 완화</p>	<p><불수용></p> <p>○ 임의 화물 위·수탁증 교부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한바 있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면 폐지하는것은 곤란</p>	<p><불수용></p>

<p>17.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결손금 처리 및 요율 조정 ⇒내부결산은 책임보험과 임의 공제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조합원의 결손금 보전조치는 통합결산후 적자부분만 부담토록 조치/ 책임보험과 임의공제의 상호 요율조정으로 각각 수지균형 유지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일부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합결산후 결손금 부과를 할 경우 임의공제부분의 적자발생시 피해 보상 곤란 ○ 책임공제와 임의공제간 수지균형을 위한 상호 요율조정을 시행할 계획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일부수용></p>
<p>18.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과적 단속 기준 완화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불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적차량 운행 제한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차량의 통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과적단속 완화는 곤란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불수용></p>
<p>19. 컨테이너 적재 운행차량 높이 제한 규정 개정 ⇒현행 4.0m를 4.5m로 개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일부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개발된 하이큐빅 컨테이너 차량의 높이 제한은 4.2m까지 조정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일부수용></p>
<p>20. 내륙화물운송 알선 시스템 개선 ⇒화물운송사업의 영세하고 낙후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륙 화물운송 알선시스템 개선 및 모범차주 대상 직거래 시범실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수용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수용></p>

<p>21. 자동차대여사업의 가맹점 제도 도입 ⇒내부결산은 책임보험과 임의공제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조합원의 결손금 보전조치는 통합결산후 적자부분만 부담토록 조치/ 책임보험과 임의공제의 상호 요율조정으로 각각 수지균형 유지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일부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합결산후 결손금 부과를 할 경우 임의공제부분의 적자발생시 피해보상 곤란 ○ 책임공제와 임의공제간 수지균형을 위한 상호요율조정을 시행할 계획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일부수용></p>
<p>22. 중고자동차 수출절차 간소화 ⇒수출지역에서도 등록말소 신청 및 수출이행여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, 사유서 등의 제출을 통해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1회연장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후검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시점에 수용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, 향후 행정자치부 및 관계기관과 심층협의후 결정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후검토></p>
<p>23. 매립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 비용 적정계산 ⇒건설기술관리법 26조의5에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을 발주자가 계상, 반영하도록 명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불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법에도 폐기물처리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고 있음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불수용></p>

2. 행정사회분과위 소관(총 31건)

□ 노동부 분야(19건)

건의요지	노동부 검토의견	심의결과
<p>1. 정리해고요건 개선(1)</p> <p>○현행 근기법상 ‘긴박한’ 경영상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, ‘긴박한’의 의미가 모호하여 해석상 다툼 발생</p> <p>-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해고회피노력을 하여야 하는데, 판례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</p> <p>⇒‘긴박한 경영상의 필요’를 ‘경영상의 필요’로 개정함</p>	<p>< 불수용 ></p> <p>○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고용안정 보호 및 정리해고 남용방지를 위해서는 ‘긴박한’ 요건이 필요함</p>	<p><추후검토></p> <p>○현재로서는 수용 곤란</p>
<p>2. 정리해고요건 개선(2)</p> <p>○경영상 해고시 노조에 대한 사전통보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지나치게 장기간임</p> <p>⇒노조와의 협의기간을 해고예고기간(30일)과 균형을 맞추도록 법개정</p> <p>⇒노조가 합의까지 요구할 경우 시정토록 권고 조치</p>	<p>< 수 용 ></p>	<p><수용></p>
<p>3. 구제명령제도 개선</p> <p>○중노위 또는 법원 등에서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이 반복될 경우 복직을 취소하거나 재해고하는 불합리가 발생</p> <p>⇒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 판정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차후 임금이 보전되므로 구제명령 이행강제를 유보</p>	<p>< 일부수용 ></p> <p>○화해제도 등 구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원직복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제를 도입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은 강구할 예정</p>	<p><일부 수용></p>

<p>4. 근로자파견제도 개선</p> <p>○현행 파견대상업무는 26개로 한정되어 있고 직접생산공정 업무가 제외되어 있어 파견근로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⇒대상업무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 및 고용의제조항 철폐</p>	<p>< 일부수용 ></p> <p>○“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”의 개정을 통하여 금지업무 및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파견대상업무 전면 확대 및 파견근로기간확대 추진(2년→3년)</p>	<p><일부 수용></p>
<p>5.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의 구별</p> <p>○도급의 경우에도 ‘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, 설비, 기재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’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간주됨 ⇒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‘수급인이 조달 불가능한 고가 장비, 첨단기술장비 등과 도급인과 공동사용하는 장비’는 제외 요망</p>	<p>< 일부수용 ></p> <p>○‘04.7월 「불법파견 관련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」 개정시 「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 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」 제3조(도급등과의 구별)제2호 다목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대형기계나 시설을 이용할 필요성과 사용에 따른 하도급자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반영</p>	<p><일부 수용></p>
<p>6. 연장·휴일·야간근로 할증률 개선</p> <p>○연장·휴일·야간근로 할증률이 국제기준보다 높아 시간외 근무 증가 등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큼 ⇒현행50%할증율을 국제기준인 25%로 개정</p>	<p>< 추후검토 ></p> <p>○현행 제도의 운영실태 및 유사제도와 비교, 외국입법례, 근로시간 단축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</p>	<p><추후 검토></p>
<p>7. 재량근로시간제 규제 개선</p> <p>○기업환경 변화로 근로자 재량이 필요한 전문적인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나, 재량근로 허용업무가 제한되어 있음 -신상품개발, 신기술개발, 정보처리업무, 방송·영화업무 등 ⇒재량근로 허용업무 제한규정 삭제</p>	<p>< 추후검토 ></p> <p>○‘04.8 노동부에서는 ‘근로시간 유연화 방안’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, 이 연구는 재량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것임</p>	<p><추후 검토></p>

<p>8.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개선</p> <p>○ 현행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⇒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일반적, 추상적으로 금지한 규정 삭제</p>	<p>< 추후검토 ></p> <p>○ '03.12.3 「노사관계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」는 노사관계 법·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대체근로 제한 완화(신규채용·하도급은 허용하되, 근로자파견 금지는 존치) 방안을 제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</p>	<p><추후 검토></p>
<p>9. 근로계약기간의 제한</p> <p>○ 근로계약의 장기화로 인한 인신구속·강제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⇒ 근로계약기간을 현행1년에서 3년으로 확대</p>	<p>< 수 용 ></p>	<p><수용></p>
<p>10.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 완화</p> <p>○ 노조법에는 경제사정의 변화를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 ⇒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자율로 정하도록 법 개정(상한선 폐지)</p>	<p>< 추후검토 ></p> <p>○ 현재 추진중인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거친 후 입법이 추진되어야 하므로, 개선 여부 및 시기를 명시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음</p>	<p><추후검토></p>
<p>11. 장애인 의무고용대상범위 및 업종별 적용비율 재조정</p> <p>○ 10~14 등급의 경증의 산재장애자는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으나 의무고용대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 ⇒ 10~14등급의 경증 산재장애자도 의무고용대상 장애인으로 인정 ⇒ 업종별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 재조정</p>	<p>< 불수용 ></p> <p>○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경증 산재장애자까지 의무고용대상 장애인으로 포함하는 것은 취업이 더욱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 일자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이 불가함</p> <p>○ 장애인의 학력이 높아지고, 이동장비, 보조공학, 작업도구 등의 발달과 직무의 다양화로 업종별 적용제외율 인정 이유가 점차 퇴색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 및 차별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임에 따라 업종별 적용제외율 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음</p> <p>※ 이러한 이유로 '04.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행 의무고용 적용제외제도 폐지를 권고</p>	<p><불수용></p>

<p>12. 전용 탑승설비 탑승자에 대한 구명줄 설치</p> <p>○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규정</p> <p>⇒구명줄 설치 삭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불수용 ></p> <p>○구명줄은 근로자가 유사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반드시 설치 필요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불수용></p>
<p>13. 도장공정내 경보장치 설치</p> <p>○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</p> <p>⇒도정공장.공정은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불수용 ></p> <p>○도장작업 중에는 가연성 증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화재·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기농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. 또한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불수용></p>
<p>14. 고소장소 발끝막이판 설치</p> <p>○발끝막이판은 바닥면 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함</p> <p>○그러나, 낙하, 비래물에 의한 위험이 없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, 조선업의 경우 협소공간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발끝막이판을 설치/해체해야 되는데 이로 인한 작업물량 증가 및 또 다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고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 있음</p> <p>⇒통행용 발판에도 발끝막이판 설치적용 제외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불수용 ></p> <p>○통행용 발판이라 하더라도 낙하·비래물에 의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통행용 발판에 대해 모두 발끝막이판 설치를 제외하는 것은 곤란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불수용></p>

<p>15. 사업장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</p> <p>○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등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,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</p> <p>⇒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의 재해만을 산업 재해 통계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재해율 산정기준을 먼저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표대상 사업장 중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공표 부분은 삭제</p>	<p>< 불수용 ></p> <p>○산업재해 통계는 나라마다 처한 제반 사정에 따라 각기 달리 설정·운용되고 있으며, 작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고나 질환이 포함되는 경우가 없음</p> <p>○우리나라는 주요선진국과 비교하여 재해율이 매우 높고 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,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공표제도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봄</p>	<p><불수용></p>
<p>16.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자율업체 지정</p> <p>○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을 받았고, 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소속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공단에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있음</p> <p>⇒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안전공단에서 확인을 실시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비현실적인 조치이므로 중단 요망</p>	<p>< 수 용 ></p>	<p><수용></p>
<p>17.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노사간 불신초래</p> <p>○근막통증과 같이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도 작업자의 호소 및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혼란</p> <p>⇒작업관련성 질환판단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</p>	<p>< 수 용 ></p>	<p><수용></p>

<p>18.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실시결과 공단 통보방법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99년부터 건강진단기관이 일반 건강진단 실시결과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,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작성양식 및 시스템이 상이하여 이중 입력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가중 ⇒ 노동부 양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시스템을 단일화하여야 함 	<p>< 수 용 ></p>	<p><수용></p>
<p>19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면 근로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○ 하지만, 산업안전보건업무편람에 의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근로자 준수사항 미준수,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위반은 제외되어 있음 ⇒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을 개선하여 근로자 준수사항 미준수,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명령 위반시에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. 	<p>< 수 용 ></p>	<p><수용></p>

□ 행정자치부 분야(2건)

건의요지	부처 검토의견	심의 결과
<p>1. 화물자동차의 외부광고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입차량에 대해서도 차량광고를 허용토록 개선 ○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 측면의 1/2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일부수용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2.8.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“지입차량”의 금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, 현행법상 지입차량의 광고가 가능함(기수용) ○ 광고물 표시면적 제한은 '01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정을 통해 크게 완화(1/4→1/2)한 바 있음 - 차량 전체 면적에 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 과도한 광고로 인한 미관훼손 등 부작용도 우려되며 - 현행규정(차체 측면의 1/2) 하에서도 시각적인 광고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(수용곤란)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일부수용></p>
<p>2. 재활용폐기물처리 계약기간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재활용폐기물처리 용역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음 ○ 설비투자 비용 등을 감안, 기존 업체가 성실히 수행하였을 경우, 일정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권한 부여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기수용(현행법상 가능)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지방재정법 제70조(국가계약법 제21조 준용)는 “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은 <u>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</u>”고 규정하고 있음 ○ 장기계속계약 체결 여부는 계약의 내용, 예산사정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으로서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님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수용></p>

□ 소방방재청 분야(3건)

건의요지	부처 검토의견	심의 결과
<p>1. 저장탱크 바닥판 두께측정시험의 중복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험물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점검 항목중의 하나인 “두께측정”을 실시함에 있어 -사용자측이 신뢰성 있는 장비(Floor Scanner)를 사용하여 이미 측정을 받은 경우 -소방안전공사가 실시하는 “두께측정”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삽입 	<p>< 수용곤란(중복 아님)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적으로 Floor Scanner(철판의 체적측정기)는 철판의 체적을 측정하여 부식률을 측정하는 기계로서 ○ 검사항목인 “두께측정”을 정확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○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(Floor Scanner)를 하지 않고, 현행규정대로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이용한 검사만 받는다면, 중복은 문제되지 않음 	<p><불수용></p>
<p>2. 폐유의 재활용처리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유재활용처리업자는 반드시 “위험물취급기능사”를 보유하게 되어 있으나 -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련교육 이수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	<p>< 일부수용 검토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자격제한에 대하여 규제완화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-안전관리자 자격제한 전반에 대한 규제정비를 검토중에 있음 	<p><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방방재청 검토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, -소규모 업체에는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를 둘 수 있도록 개선권고
<p>3. 위험물 분류에 대한 통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화성액체 위험물에 대한 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, 유해화학물질관리법, 산업안전보건법에 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법령간 통일 필요 	<p><장기검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UN의 권고에 의하여 모든 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체제를 2008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- 이는 국제적 동향 및 이행도를 감안하여 기준을 수립하고 추진속도를 조정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음 	<p><별도검토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규제개혁 기획단에서 추진중인 과제임

□ 법무부, 보건처, 국방부 분야(3건)

건의요지	부처 검토의견	심의결과
<p>1 물류업체 현장 근무 인력난 해소(법무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 산업연수생 채용 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류업은 아직까지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어 내국인의 취업기피가 심하고 이직률도 높음 - 외국인의 평균 임금이 내국인보다 낮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효과도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연수업체 지정취지, 물류업체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산업연수 허용업종으로 물류업 추가 지정은 불가 ○ 다만 향후 물류업의 인력 부족추이를 고려, 사용자는 물론 해당업종에 일하는 내국인근로자들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야가 있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분야에 산업연수생 도입허용여부에 대해 “외국인력정책위원회(위원장 : 국무조정실장)”에 안건을 상정, 결정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별도검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물류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에 포함되어 검토 중
<p>2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제도 개선(보건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을 기업체에서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 ○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분담금과 같은 제도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에 대하여 부담완화를 추진하여 왔고, 현재 취업 대기자수가 4,400여명으로 증가하여 고용비율과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형편임 ○ 미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부 건설한 기업체들이 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을 기피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취업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후검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고용비율, 미고용분담금 제도 도입, 공무원 시험 등 각종시험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해 규제위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므로 규제위에서 재검토할 것

<p>3. 대기업 병역특례 T/O확대 (국방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위주의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으로 대기업의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워 인원배정 규모 확대요구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수용곤란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졌고, '04년 현재 대기업 배정인원 비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임 ○ 개인별 인원배정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대기업 집중 현상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초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바 대기업 병역특례 T/O확대에는 병무청 의견에 따라 전문연구 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함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불수용></p>
---	---	---

□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청 분야(4건)

건의요지	부처 검토의견	심의결과
<p>1.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제도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업무에 종사한 지도 인정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기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성분을 제조한 경력도 이미 인정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수용></p>
<p>2.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관련 영업신고를 득하기위한 피교육자의 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관련 영업신고시 대리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피교육자의 범위 확대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법률에서는 위생관리 책임자에 대한 대리교육 규정이 없으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후 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및 법령개정을 통해 일정한 경우 대리교육을 인정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수용></p>
<p>3.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광고 표시 사항 기준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능성에 대한 임상실험 내용 ○ 부원료에 대한 기능성 ○ 특허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특허등록 사실 및 SCI, SCE관련 논문 등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일부수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 임상실험결과 등의 표시·광고는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통과시 가능 ○ 부원료의 기능성표시는 개별인정형 제품으로 인정 받아 가능 ○ 특허는 기본적으로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또한,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에 부합할 때 특허명칭 등의 표시·광고 가능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일부 수용></p>

<p>4. 건강기능식품 종전기준 적용 마감일 연장</p> <p>○ '04.1.31 이전 신고품목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경과규정에 의하여 '04. 8. 26까지 약 7개월 정도 판매가 가능하여 어려움이 많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기수용></p> <p>○ '04.1.31 기준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는 '04. 8. 26까지는 식품위생법 제 10조에서 규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고, 동 제품은 유통기한이 만료전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수용></p>
---	---	---